

의안번호	제 64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6월 2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41

제출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·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 : 조례명 중 “지원”을 삭제하여 명료화
‣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⇒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
- 위원회 기능변경(안 제10조) : 자문→ 심의·자문 기능으로 확대
‣ 자문에 ⇒ 심의·자문에
-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변경(안 제11조) : 업무중심 직위명으로 변경
‣ (제2항)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⇒ 위원장은 과학기술관련
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
‣ (제3항) 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 ⇒ 도 과학기술바이오 업무 담당국장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자문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”를 “위원장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”을 “도 과학기술·바이오 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당해직위”를 “해당직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부위원 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~제9조(생략)</p> <p>제10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<u>자문</u>에 응한다.</p> <p>1. ~ 6.(생략)</p> <p>제11조(위원회 구성)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<u>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이</u>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</u>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④당연직 위원은 <u>당해직위의</u>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</u></p> <p>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</p>	<p><u>충청북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</u></p> <p>제1조~제9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위원회 기능) ----- ----- -----<u>심의 · 자문</u>-----.</p> <p>1. ~ 6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회 구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<u>관장하는 부지사가</u> ----- -----.</p> <p>③----- ----- <u>도 과학기술 · 바이오 업무 담당 국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-----<u>해당직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.(삭제)</p> <p>⑤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<u>부위원</u>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⑥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u>부위원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·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,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